#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월 21일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 1 임용예정인원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 예정지
운전	운전서기보	1명	정년 적용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충청북도 충주시)

###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운전	운전서기보	ㅇ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업무
		ㅇ 일반 사무보조 등 행정업무
		ㅇ 신병 호송 및 관리업무
		ㅇ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sup>※</sup>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80호),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대검찰청 예규 제1394호)

### 4 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 3. 6.) 기준]

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운전	필수자격증	○ <b>제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b> - 국내 자격증에 한함 - 면허 정지 중 또는 면허 취소·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 기본사항

- <mark>응시자격요건</mark>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u>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 3. 6.)</u> 기준으로 판단함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우대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5. 1. 31.) 기준]

#### [우대요건 고려사항]

####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5. 1. 31.)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서류전형 시 이력서 상에 기재한 우대사항요건 중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 우대요건 관련

#### 1) 직무(운전) 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요건 충족(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이후, 최근 10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여객 운송(운행)이 주된 업무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승차정원 16인승 이상)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만 인정
  - ▶ 승합자동차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 개인사업자, 화물차량 및 특수차량(예: 굴삭기, 포크레인) 등 여객운송이 주된 업무가 아닌 경우,
     운전을 부수적 업무로 수행한 경우 경력 불인정(군 운전경력 동일 적용)
  - ▶ 원서접수 마감일(2025. 1. 31.) 기준 최근 10년 이내 경력 인정
  -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시 <u>아래 ①~⑧항이 모두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u> 한하여 경력 인정

### 【 경력(재직)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

- ① 업체명
- ③ 직위(직급)
- ⑤ 운행차종(승합자동차임을 명시)
- ⑦ 근무형태(주 근무시간)

- ② 근무기간(시작일~종료일)[연·월·일 기준]
- ④ 담당업무
- ⑥ 승차정원(중형/대형 및 00인승 필수기재)
  - ⑧ 발급자, 확인자 연락처 기재 및 날인

- ☞ 경력(재직)증명서 양식에 위①~⑧항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 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는 추가로 공고문에 첨부한 [별지 제9호] 서식을 제출하여 증빙
-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위①~®항 중 일부만 기재하거나 경력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 경력(재직)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 경력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

(담당업무 등을 증빙하기 위하여 당시 근로계약서 등 증빙 자료 첨부 가능)

-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경력 1건만 인정
- ▶ 외국어로 된 서류나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한글 번역본 미제출 시 해당 경력 불인정)
- ▶ 군 운전경력의 경우, 운전 관련 주특기자로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인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력이 군운전경력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수송병과 또는 운전병 특기 등 병과·주특기 기재만으로 운전경력 불인정, 군 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 불인정
- ▶ <u>운전직 공무원 경력</u>의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상 운전직렬 명시만으로 경력 인정이 불가 하므로 **담당 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예: 4년간 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4년 X (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담당업무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 ①~④항 서류를 모두 제출 필수

#### 【기관 폐업 시 제출 서류 목록】

- ① 경력(재직)증명서 외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 ②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 \*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③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 4대보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④ 소득금액증명서
- ※ 원서접수 시 제출하는 경력(재직)증명서 외에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장에서 경력 검증자료 제출 절차가 있음(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과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1부)

#### 2)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자(공고일 이후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 운전 전체 경력 중 무사고 운전 경력 우대 (교통법규 준수자) 운전 전체 경력 중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우대

- ※ 면허종별 제한 없음(군 경력 포함)
- ▶ <mark>공고일 이후</mark> 경찰서 또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모든 응시자 필수 제출
- ☞ 인터넷발급(정부24)증명서는 문서확인번호 및 타임스탬프(진본확인)가 있는 서류 제출
- ▶ 대형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①운전면허경력, ②법규위반, ③교통사고를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
- ☞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경우와 조회기간이 '전체경력'이 아닌 경우 최대점 감점
- ▶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경력 확인 시 횟수에 따라 차등 감점,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확인 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점 감점

#### 3) 직무(운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증별 차등 배점)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검사관련 국가자격증만 인정
- ☞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구 자동차검사(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 소지자
- ☞ 국내 국가기술자격증만 해당
-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최고점 1개만 인정

#### 4)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증별 차등 배점)

- ▶ 전산관련 자격증
- ☞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및 워드프로세서(2012. 1. 1. 이전의 1급 포함) 자격증
-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최고점 1개만 인정
- ☞ 임용예정직위, 제출서류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붙임3" 참조

### 5 시험 방법

### 가. 서류전형

- 임용 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7명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8명~49명인 경우에는 8명, 50명~99명인 경우에는 10명, 100 명 이상인 경우에는 15명을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적극적 전형을 실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 평정요소 】

-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 ④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⑤ 기타 우대사항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 -(평가방식) 개별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5. 1. 21.(화) ~ '25. 1. 31.(금)		'25. 2. 26.(수)	'25. 3. 6.(목)	'25. 3. 19.(수)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나라일터 홈페이지 (www.gojobs.go.kr) 및 청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cheongju) 알림(고시·공고)란에 게재 예정

#### 7 유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u>2025. 1. 23.(목) ~ 1. 31.(금)</u>
- 접수처 :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 ❖ (우 286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 ※ 총무과 채용담당 / 문의전화 : 043-299-4544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원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함
  - 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 및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서류 접수 시, 우편 봉투 겉표지에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번호"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음 ※ 2025. 2. 14.(금)까지 응시번호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접수처에 문의

####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응시자 기본서류 1부	ㅇ 별지 제1호
	응시원서 1부 (* 수입인지 포함)	o 별지 제2호
	이력서 1부	ㅇ 별지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별지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 제6호
공통사항 (필수 제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ㅇ 별지 제7호
(21 11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ㅇ 별지 제8호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최종학교 졸업(재학, 휴직, 재적, 졸업예정) 증명서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착·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1부	
	운전경력증명서 1부	
개별사항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별지 제9호
(해당자에	직무(운전)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한함)	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 워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25. 4. 7. ~ 4. 11.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채용 예정일 : 2025. 4월 초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9 안내 및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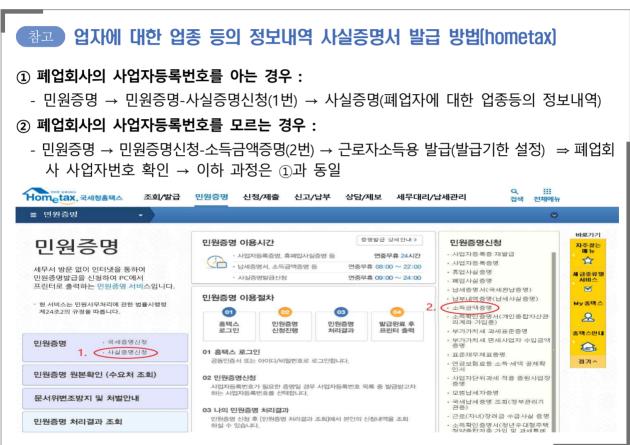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 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 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 ①~④항의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043-299-4544)로 문의 바랍니다.

##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N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 · 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검찰청법」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찰청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붙임 2

#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	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운	전	운전	운전서기보	1명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충청북도 충주시)
주요	업무	<ul><li>○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업무</li><li>○ 일반 사무보조 등 행정업무</li><li>○ 신병 호송 및 관리업무</li><li>○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li></ul>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무분야 역량)  - 상황인식/판단력, 업무이해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당  - 차량의 운전 및 정비 능력  -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사소 <del>통능</del> 력·조정능력		
필요 지식		<ul><li>○ 교통관련 법규 및 규정에 관한 지식</li><li>○ 차량 운행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li><li>○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컴퓨터 활용 지식</li><li>○ 검찰청 주요 업무 관련 지식</li></ul>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국내 자격증에 한함 - 면허 정지 중 또는 면허 취소·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우대요건		<ul><li>○ 무사고</li><li>○ 직무(운</li><li>○ 전산 관</li></ul>		고통법규 준수자  된 자격증 소지자 자	

※ "응시요건(자격증)"은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제출서류 안내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용
<b>1. 응시자 기본서류 1부</b> (별지 제1호)	○ 필수 제출 ○ 제출유무 (▽)표시 ○ 자필 서명 필수
<b>2. 응시원서 1부</b> (별지 제2호)	○ 필수 제출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b>3. 이력서 1부</b> (별지 제3호)	○ 필수 제출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b>4. 자기소개서 1부</b> (별지 제4호)	○ 필수 제출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b>5 직무수행계획서 1부</b> (별지 제5호)	○ 필수 제출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6. <b>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b> (별지 제6호)	○ 필수 제출 ○ 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 필수 제출 ○ 자필 서명 필수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 필수 제출 ○ 자필 서명 필수
9.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 제출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10. 최종학교 졸업(예정,재학,휴학,재적) 증명서 1부	○ 필수 제출 ○ 전형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구 분	내 용		
11.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1부	○ 필수 제출 ○ 국내 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12. 운전경력증명서 1부	○ 필수 제출 ○ 공고일(2025. 1. 21.)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경력' 으로 발급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gov.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인 경우 또는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점 감점		
13. 경력(재직) 증명서 1부 ※「공고문 4.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필독	○ 해당자에 한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시 아래 ①~⑧항이 모두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재직)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         ① 업체명       ② 근무기간(시작~종료 / 연·월·일)         ③ 직위(직급)       ④ 담당업무         ⑤ 운행차종(승합자동차 명시)       ⑥ 승차정원(중형/대형 및 00인승 기원		
14. 직무(운전)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한글 요약본 첨부 ○ 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검사 관련 국가자격증 -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구 자동차검사(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		
15. 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o 해당자에 한함 -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2012. 1. 1. 이전의 1급 포함) 자격증		

- \* 제출서류는 상기 <u>순서대로</u> 정리한 후, <u>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u>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 반드시 단면으로 인쇄하여 제출